

전문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주력업종 : 습식 · 방수공사업)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 10. 07.

경기문화재단 경영지원팀

< 참가시 주의사항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로써, 당해 공고문을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제11조 (등록기준 확인)에 따라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상상캠퍼스 환경개선(디자인1978, 공간1986-II 옥상방수공사)			
공 사 현 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공 사 내 용	<p>① 공간1986-II 옥상 방수 - 바닥(407㎡), 벽(69㎡) 보수 및 난간 정비 - KEEP 복합방수공법</p> <p>② 디자인1978, 옥상방수 - 바닥(1,119㎡), 벽(60㎡) 보수 및 난간 정비 - KEEP 복합방수공법</p> <p>* 자세한 내용은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p>			
공 사 기 간	<p>착공일로부터 25일 (공휴일, 사전 준비기간 포함)</p> <p>* 착공예정일: 2024. 00. 00. / 준공예정일: 2024. 00. 00.</p> <p>*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p>			
공 사 구 분	유지보수(단일업종)공사			
공 종 구 성	<p>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100%, 주력업종: 습식 · 방수공사업)</p> <p>* 주력분야 외의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p>			
주 정 금 액 (A=B)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198,693,000	198,693,000	180,630,000	18,063,000	도급자 관급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특기사항

가. 본 공사는 특허 공법 적용 공사입니다.

- 적용공법 : KEEP 복합방수공법(특허 제 10-0648177호) ► 건축물의 지붕, 옥

상등의 노출 방수에 적용

- 나. 본 공사는 KEEP 복합방수공법(특허 제 10-0648177호)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특허 공법 및 특허 보유자 사용협약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기술 보유자와 세부 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착공계 제출 시 협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는 별도의 통보 없이 차순위 적격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특허 공법 적용 및 특허 보유자 현황 】

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특허 보유자	비 고
특허 제10-0648177호	KEEP 복합방수공법	보유자 : 티아이브이건설 주식회사	원가계산서에 특허 사용료 계상

- 다. 견적공고서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공사기간은 사전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착공일로부터 25일**이며, 공사기간 이내 준 공하여야 합니다.
- 라. 본 공사는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마. 공사시기 및 물량, 회사 인력상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 바. 계약 후 착공 전까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착공일(2024. 00. 00.)부터 즉시 착공하여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사.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나.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라.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제외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바.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추정가격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 · 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

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반영대상으로 제외하고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는 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0원	0원	0원	1,686,233원	3,640,407원	5,326,640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2) 퇴직공제부금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 해야 함.(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아. 본 공사는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센터 일정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하여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자는 본 공사가 경기상상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용 주민 및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 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주력업종: 습식 · 방수 공사업, 나라장터 코드 4992)” 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견적제출 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로.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http://www.g2b.go.kr)(<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 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나. 공고문에 과업지시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 예정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0. 07. 10:00 ~ 2024. 10. 11.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면세사업자는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본 견적제출에 동일인(견적제출에 참여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바.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0. 11.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자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 제출

-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 가. 본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및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발주 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 근로자만으로 구성,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이 제도를 이용 불가능 하다고 발주 기관이 인정),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제외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제외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근로자법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5.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6.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용)
-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공고일 현재용)
-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공고일 현재용)
- 5)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6)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견적 입찰 공고일 기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

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 바.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과 관련한 제반 서류 제출,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은 경기문화재단 경영지원팀(☎031-231-7276)에서 처리합니다.
- 사. 기타 계약이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별도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 의함.

【제안 요청 관련 문의】

- 사업부서 : 문화자치지원팀
- 전화번호 : 031-296-1763

【계약 관련 문의】

- 계약부서: 경영지원팀
- 전화번호: 031-231-7279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수수 등 비위 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경기문화재단 인권감사관실(e-mail : kbway@ggcf.or.kr ☎031-231-7286)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공익제보 핫라인
공익제보 핫라인
광성경기
2580

* 공익침해, 공직자 부패·행동강령위반 제보

* 보상금 : 도 폐행수입의 30%(상한액 없음)

* 보상금 : 최대 2억원까지 지급



2024. 10. 07.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 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재)경기문화재단 귀하

【붙임2】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